

ISSUE BRIEFING

2019. 10. 14  
Vol. 209

# 2019

# ISSUE BRIEFING

연구진

황영모\_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 CONTENTS

1.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필요배경 .....	02
2.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대응방향 .....	03
3.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정책구상 .....	05
4.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	07

## 1.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필요배경

- 농촌주민은 생활세계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복지 인프라의 부족과 보완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미충족 수요’<sup>1)</sup>는 돌봄과 의료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주제로 수요와 일치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수준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생활SOC 부족은 농촌주민이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책과 사회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 공적부조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체적·경제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머물러 사회적으로 취약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 생활SOC 기반이 취약하고 대다수 주민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생생활에서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대응한 이른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생활돌봄 : 농촌주민이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로 장보기, 말벗,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의미

- 이러한 생활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 (community)의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회자본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
- 과소화되어 고령화된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생활돌봄 서비스는 공동체 조직이 담당하면서 귀농·귀촌자 등과 같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일 수 있음
- 이 글은 ‘농촌지역 생활돌봄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현실화하고,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sup>2)</sup>

1) ‘미충족 돌봄’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김수정 외, 2011), ‘돌봄과 의료’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면 신체 건강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 스스로 정서적 안정도 찾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수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Barnay & Juin, 2016)

2)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하여 제안한 ‘농어촌 삶의 질 부문별 핵심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에서 수정 보완한 것임

## 2.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대응방향

### 1) 농촌사회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입'이 중요

- 농촌지역에 경제활동과 생애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위협에 노출되어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득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문화·교육·주택·건강·사회보장'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대부분이 고령자인 '원주민'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며,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와 귀농·귀촌자 등과 같은 '이주민' 또한 농촌사회의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현실에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sup>3)</sup>
  - 농촌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한 시점임

### 2)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미충족 돌봄 수요의 대처'가 관건

-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은 양적·질적 수준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위에 놓여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생활SOC(기반)의 격차<sup>4)</sup>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 그럼에도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감 등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는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sup>5)</sup>
- 농촌지역에서 일정한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음
  - 생활상의 돌봄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수급)기준에 따라 최저수준을 지원하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움<sup>6)</sup>
- 기존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농촌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농촌주민의 '미충족 돌봄'<sup>7)</sup>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

3) 전국적으로 면(面)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27.2%에 달하며, 다문화 배경과 귀농·귀촌 가정은 지역사회 사회관계망에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4) 삶의 질은 '보건복지·교육·정주생활기반·문화여가·안전' 등에서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큼

5) 현재 행복감(농촌 6.1>도시 5.9), 사는 곳 만족감(농촌 6.2>도시 6.1) 등은 도시민에 비해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10점 척도,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6) 농촌주민(고령자)의 행복감에 긍정(+)요인은 '연령·교육수준·인터넷이용·자기주택·가구소득·가족만족도·지역사회 만족도·생활여건 만족도'인 반면, 부정(-) 요인은 '공적부조'로 나타남(박창제·신동호, 2018)

7)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 3) 농촌지역 '사람의 역할' 부여로 활력 도모

- 과소화된 농촌지역의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매우 높아, 면(27.2%)은 동(12.3%)의 2.2배나 되며, 연령(중위)도 면(52.1세)과 동(41.2세)이 큰 차이를 보임
  -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외부 인구유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이러한 어두운 현상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1만호를 넘어서고 있어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담당할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고령화된 농촌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자<sup>8)</sup>는 지역사회의 핵심 인적자원이며, 지역사회 활성화의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여 농촌사회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임

### 4) 농촌지역의 '생활돌봄과 담당인력 찾기' 필요

-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어려움에 처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공적부조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생활돌봄'이 절실한 상황임<sup>9)</sup>
  - '생활돌봄'은 농촌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필요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충족시켜내는 실효적인 전략마련이 관건임
- 지역사회(community)는 본질적으로 취약성과 불완전한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사회규범이 작동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과 같이 '주민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외부 자원에 의존하기보다 농촌사회 내부의 인적자원을 활동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역할 찾기가 필요

〈표 1〉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역할 찾기 접근방향

영역	현실문제	대응방향	핵심어
농촌사회	사회적 배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입	사회적 취약계층
농촌주민	삶의 질 저하	미충족 돌봄수요 대처	미충족 돌봄수요
농촌지역	고령화·과소화	인적자원(사람) 역할부여	귀농·귀촌 청년

↓

접근방향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역할 찾기'
------	----------------------

8) 귀농·귀촌자 중 40대 미만 청년은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미충족 돌봄' 영역에서 여러 역할이 기대됨. 실제로 40대 미만의 청년 귀농·귀촌자는 '대안가치형'을 추구하고 있음(마상진, 2019)

9) 현대사회는 사회적 돌봄 의무를 전적으로 특정계층, 젠더 등에 맡기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돌봄사회는 반드시 '민주주의'와 '만남'의 힘을 강조하고 있음(신영전, 2018)

## 3.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정책구상

### 1)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대상을 세분화'

- 첫째, 농촌지역에서 생활돌봄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공적부조 영역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꼽을 수 있음
  - 이들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신체적'으로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기준소득 이하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음
  - 농촌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농촌주민의 약 27.2% 수준으로 중점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복지 정책의 수급자 →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대상
-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기반으로 대다수의 농촌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어 생활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 공적부조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고령자, 다문화 배경, 귀농·귀촌 가족 등은 생활상 돌봄 필요·수요가 충족 되지 못하는 대상자 →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가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상의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농촌 주민의 별도 '생활돌봄 서비스'를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표 2〉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세분화

대 상	서 비 스	면지역 연령구조(2017)								
취약계층-수급자 (공적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장기요양 등에서 규정하는 공적부조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청소년 12.9%</td> <td rowspan="2">학교돌봄 12.9%</td> </tr> <tr> <td>청년층 21.8%</td> </tr> <tr> <td>중년층 38.1%</td> <td>사회돌봄 59.9%</td> </tr> <tr> <td>(전기)고령자 13.0%</td> <td rowspan="2">공적부조 27.2%</td> </tr> <tr> <td>(후기)고령자 14.2%</td> </tr> </table>	청소년 12.9%	학교돌봄 12.9%	청년층 21.8%	중년층 38.1%	사회돌봄 59.9%	(전기)고령자 13.0%	공적부조 27.2%	(후기)고령자 14.2%
청소년 12.9%	학교돌봄 12.9%									
청년층 21.8%										
중년층 38.1%	사회돌봄 59.9%									
(전기)고령자 13.0%	공적부조 27.2%									
(후기)고령자 14.2%										
일반 고령자 다문화·귀농·귀촌 가족 (생활돌봄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돌봄 수요									

### 2)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

-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적 계층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있지만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생활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지원, 병원 동행, 주택관리, 직업훈련·취업 상담 등'으로 조사됨<sup>10)</sup>

10) 가전제품 이용, 이불빨래, 기차표예매, 휴대전화 이용방법, 우편/택배 대행 등의 수요도 높으며, 특히 복지 전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문화 바우처를 사용한 곳이 없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접근도 어렵고, 고령자에 비해 여성과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논의도 부족한 실정임. 단, 공적부조 성격의 '생계비·의료비·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기초연금'은 제외(박대식 외, 2016)

- 농촌주민이 원하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이를 ‘생활돌봄’ 방식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유효한 방안임
  - ‘생활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성원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효과를 높여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표 3〉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구 분	형 태	세부내용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장기요양 공적부조	신변활동(식사·세면·체위·옷·구강·신체·화장실·외출·목욕), 가사생활(취사·생활필수품구매·청소·세탁), 생활·정서지원, 주거환경·여가활동 지원, 안전확인(방문), 생활교육(운동·건강), 서비스 연계(고용보장·권익보호·건강보장·영양관리·주거보장·사회활동여가) 등
생활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미 충족 돌봄수요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수단, 병원 동행, 주택관리, 직업훈련·취업 상담, 가전제품·휴대전화 이용방법, 이불빨래, 교통수단(버스·기차표) 예매, 우편·택배, 스마트폰사용 등

### 3)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담당인력의 지역화’

- 농촌 공적부조 전달체계에서 돌봄 서비스 담당인력은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로 ‘노인요양보호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료인 면허증 소지자’ 등이 주를 이룸
  -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공적부조를 담당할 인력은 지역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서비스 행위를 맡고 있는 실정임
-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에서 요구하는 지원은 ‘장보기, 말벗, 배달, 교통수단 지원, 동행, 상담, 전자기기 이용’ 등 특별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은 아님
  - 자격조건이 요청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서비스는 특정 지역 주민과의 관계망이 높을 경우 서비스의 수준·효과는 달라질 것임
- 따라서 ‘주민의 행복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돌봄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사회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귀농·귀촌 청년 등의 인적자원을 담당인력으로 하여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표 4〉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담당인력

대 상	담당인력과 자격기준
공적부조 서비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면허 소지자 등
생활돌봄 서비스	자격기준 없음 (생활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운전 등)



## 4)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담당주체와 제공방식’

- 공적부조 돌봄 서비스는 정부와 정책대상이 직접 관계(신청→심사→관리)를 맺고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인력은 외부의 전문인력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지역주민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생활돌봄은 지역사회 전체가 담당’할 때 생활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지역의 사회자본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역량으로 축적되어 지속가능할 수 있음<sup>11)</sup>
- 농촌지역 주민과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community) 안에서 이뤄지는 관계맺기이며, 이는 결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파생적 결과(성과)로 나타나는 것임
  - 이렇게 보았을 때 생활돌봄의 활동주체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대표적 형태인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 공동체 조직’을 세우고, ‘행정조직’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개발 프로그램’의 추진방법임

〈표 5〉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주체와 제공방식

구 분	돌봄 서비스 주체 및 제공방식
공적부조 서비스	행정-대상자 직접 관계(신청→심사→관리), 외부 전문인력
생활돌봄 서비스	사회적경제와 주민공동체 조직, 행정은 프로그램 운영·지원

## 4. ‘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 1) 정책구상

#### • 기본개념

농촌지역에서 생활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조직’이 활동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도록 담당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행정조직(읍·면)에 생활돌봄 수요 대응인력을 배치·운영

####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공적부조 대상자(취약계층 수급자)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생활돌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

11) 생활돌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사회 스스로가 돌봄을 조직화하고 제공하면서 적절하게 작동시켜 공동체(community)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미충족 생활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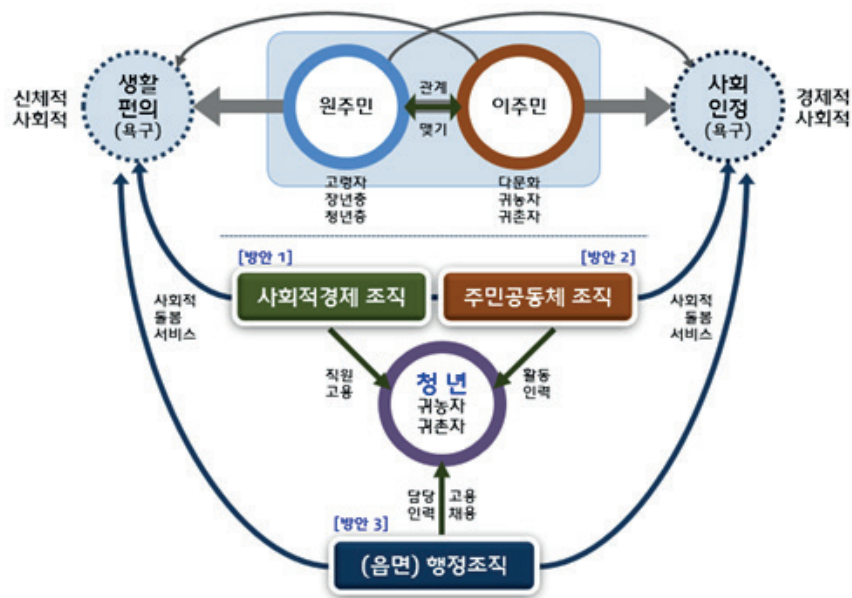
사업메뉴 방식의 (공적부조)수급자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신체적 한계로 충족되지 못하는 해결 가능한 크고 작은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

• 활동주체 : 공동체 활동조직

지역의 사회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공동체 조직(사회적경제+주민공동체)을 활동주체로 하고 행정은 생활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태세(전담인력)를 갖추

• 지원방식 : 활동인력의 고용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활동주체(조직)가 실효인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동인력을 (귀농·귀촌)청년의 사회적 활동과 연계하여 직접 고용을 지원



〈그림 1〉 농촌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개념

## 2)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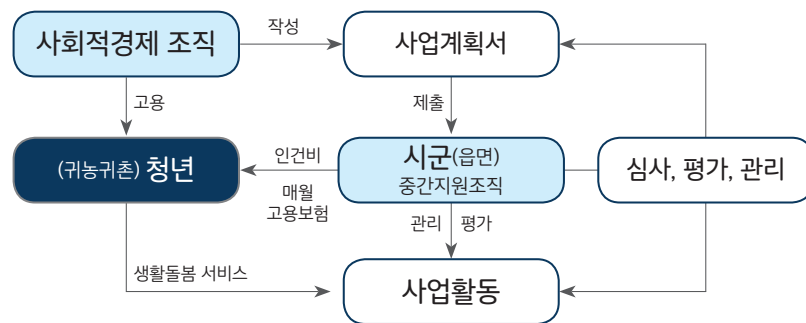
- 추진방식 : 생활상 필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sup>12)</sup>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청년의 직원 고용을 지원

12)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이해당사자경제(stakeholder economy)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람-노동을 중시하는 경제활동 조직. 대표 사례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업법인 등(황영모 외, 2017)



##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 농촌지역에서 생활돌봄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고용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존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사업과 활동으로 생활돌봄 서비스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직원고용을 지원
- 생활돌봄 서비스 예시 :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물품지원, 도시락 배달, 교통픽업, 병원동행, 가전제품 이용, 이불빨래, 기차표 예매, 휴대전화 이용, 우편·택배대행 등
- 유사사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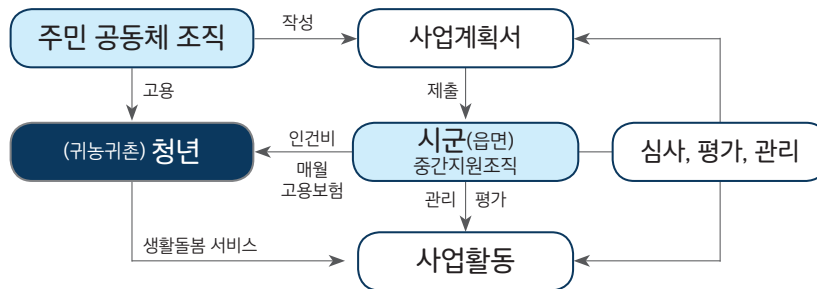


〈그림 2〉 농촌 사회적경제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 3) '주민 공동체 조직' 방식

- 추진방식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sup>13)</sup>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한 활동을 담당할 (귀농·귀촌)청년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
  - 인건비 지원 :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공동체 조직이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청년(전담직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청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사업비 지원 : 주민 공동체 조직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자 하는 사업과 활동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활동인력 인건비와 직접 사업비를 지원
- 생활돌봄 직접 프로그램 예시
  - 공동체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 주민조직,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 순환경제 : 전통장터(5일장 등)의 복원,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 : 지역 고유의 문화행사, 전통행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 생활서비스 : 이동점포 운영, 읍면지역 복지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도농교류 : 도시민 도농교류,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 유사사례 : '전라북도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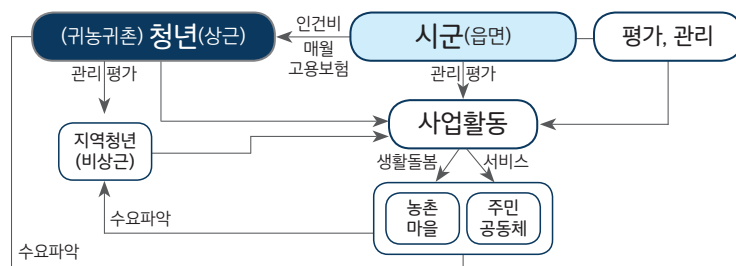
13) 주민 공동체 조직 : 주민자치회, 마을회(영농회), 농업인단체, 농업인학습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그림 3〉 농촌 주민공동체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흐름

#### 4) ‘행정조직(읍·면)’ 방식

- 추진방식 :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이 되는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sup>14)</sup>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할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청년의 상시고용 ‘인건비’와 생활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
  - 생활경제권 단위로 기능하는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농촌주민(농촌마을, 주민공동체 조직)의 생활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청년을 담당인력으로 채용하여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
  - 읍·면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농촌 생활돌봄 수요대응 인력’의 인건비와 직접 사업비를 지원
  - 생활돌봄 서비스와 생활돌봄 직접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공동체 조직’ 지원내용과 동일
- 지원방식 :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가 계약직(공무원)의 모집 공고-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고용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생활돌봄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원
  - (1단계) ‘읍·면사무소’에 농촌마을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상근 ‘담당인력(1명)’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발 (계약관계)
  - (2단계) 비상근 인력으로 ‘생활돌봄 서비스 수요 대응팀(2~3명)’을 구성하여 농촌마을 단위의 사회복지 등 생활의 수요에 대응할 인력 구성
  - (3단계) 채용된 담당인력이 주민 공동체의 생활돌봄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사업·활동비를 지원, 비상근 인력은 일비로 지원
  - 유사사례 :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완주군)



〈그림 4〉 농촌 생활돌봄 수요대응 사업 흐름

14) 행정조직 : 공적부조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이외에 생활민원 등 생활돌봄 지원이 절대 필요

#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표 6〉 농촌 생활돌봄과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비교)

구분	① 사회적경제 조직 방식	② 주민공동체 조직 방식	③ 행정조직(읍·면) 방식
사업 명칭	농촌 사회적경제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농촌 주민공동체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사업	농촌 생활돌봄 수요대응 지원사업
주요 목적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활돌봄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조직의 생활돌봄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돌봄 서비스의 책임행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구상	주민대상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청년고용 지원	주민대상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과 주민공동체 조직의 청년채용 지원	읍·면사무소 생활돌봄 수요대응 담당인력 청년채용 지원
대상 조직	법인, 사회적경제 조직	임의조직, 주민공동체 조직	(읍·면) 행정조직
서비스	농촌주민 대상 생활돌봄 비즈니스		생활돌봄 서비스의 수요파악 대응
지원 형태	직원고용	활동인력	담당인력 (상근+비상근)
계약 관계	시군-중간지원조직-활동인력 계약	시군-중간지원조직-활동인력 계약	시군(읍면)-활동인력 계약
사후 관리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점점·평가, 정착지원		
유사 사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전라북도)	생활민원 기동반민원 (완주군)

\* 상기의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은 선택의 대안이기 보다 동시에 정책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사회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참고문헌>

- 김수정 외(2011), '지역사회 거주 중고령자의 미충족 돌봄요구와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31(2).  
 마상진(2019),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2016), '농촌주민의 사회적경제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창제·신동호(2018),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보건사회연구 38(4).  
 신영전(2018), '논설-커뮤니티케어 성공의 전제', 보건사회연구.  
 황영모 외(2016),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Barnay, T., & Juin, S.(2016), 'Does home care for dependent elderly people improve their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 45.



**ISSUE BRIEFING**  
2019. 10. 14 **Vol. 209**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각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